

## 위기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입 편의 증진 규제 완화 안내 -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등 -

관세청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개요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으나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발생)
세관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되었다.</li> <li>-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하였으나, 기한이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li> </ul>
위원회 완화조치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 II. 계약 상이 수입물품을 '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li> <li>-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li> </ul>
----	---

위원회 완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li> <li>-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보세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li> <li>-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li> </ul>
----------	---

### III. 개발도상국 수입물품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 합리적 해석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이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li> <li>-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li> </ul>
위원회 완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li> <li>-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 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li> </ul>

### IV. 담당 부서

#### 1.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최현정	과장	042-481-7670
최형권	사무관	042-481-771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적극행정 통해 위기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 Contact



양다윤 관세사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박수민 팀장

T 070-4353-5153  
E smpark2@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